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3호로 2021년 10월 8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8조에 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1. 10. 6. ~ 10. 1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건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건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 본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 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 7. 및 제④항 (생략)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 (생략)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⑧ (생략)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4호로 2021년 10월 8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1. 10. 8.~ 10. 12.)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초기단계이자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조기발견은 적극적인 장애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영유아에게 조기진단과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시행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예방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단과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 ④ (생략)